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324
----------	-------

발의연월일 : 2025. 12. 17.

발 의 자 : 김미애 · 김재섭 · 김기현
권성동 · 김위상 · 김소희
박상웅 · 김선교 · 이종배
이달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기획예산처장은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한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등이 포함된 국가재정운용계획이 9월 초에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국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며, 예산안편성지침 등의 국회 보고 시한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예산 절차의 명확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회 제출 시한을 6월 말까지로 앞당기고, 예산안편성지침 등의 국회 보고 시한을 4월 중순으로 명시함으로써

국회 예산 심의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제30조 및 제66조제4항).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를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0조 중 “예산안편성지침을”을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4월 15일까지”로 한다.

제66조제4항 중 “작성지침을”을 “작성지침을 매년 4월 15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재정운용계획 제출,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 제30조 및 제6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거나 작성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 계획(이하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u>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u>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 ----- ----- ----- ----- ----- <u>6월 30</u> <u>일까지</u> ----- -.
② ~ ⑪ (생략)	② ~ ⑪ (현행과 같음)
제30조(예산안편성지침의 국회보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 <u>예산안편성지침</u> 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예산안편성지침의 국회보고) ----- ----- ----- <u>예산안편</u> <u>성지침</u> 을 매년 4월 15일까지-- ----- -----.
제66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① ~ ③ (생략)	제66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한 기금운용계획안 <u>작성지침</u> 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④ ----- ----- ----- <u>작성</u> <u>지침</u> 을 매년 4월 15일까지----

에 보고하여야 한다.	-----
	-----.
⑤ ~ ⑧ (생략)	⑤ ~ ⑧ (현행과 같음)